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17일

정남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천	이 *천 1958-02-26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과량1길8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3-29